

이사회 회의록

1. 회의소집통지 내용

- ▶ 통 지 일 : 2025년 07월 31일(목)
- ▶ 통지대상 : 사회복지법인 용산상회원 이사11명, 감사2명
- ▶ 통지방법 : 공문, 유선통화, 문자메세지
- ▶ 회의목적(회의안건)
 - 제1안) 용산상회원 운영규정 변경(안)에 관한 건
 - 제2안) 2025년 제2차 추가경정 세입·세출 예산(안)에 관한 건
 - 제3안)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에 관한 건
 - 양재동 1~4층(지하층 공용면적포함) 재계약

2. 회의일시 : 2025년 08월 13일(수) 11:00

3. 회의장소 : 사회복지법인 용산상회원 회의실

4. 총 임원수 : 이사11명, 감사2명

5. 출석이사수 : 대표이사 이호, 이사 임영호, 김학진, 황광동, 최역
평진호, 윤종희 총7명
감사 장근식, 윤용식

6. 회의내용

◎ 이경준 과장

- 용산상회원 정관 제27조 규정에 의거 재적이사 1/2이상인 7명의 이사께서 출석하였기에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.
- 다음은 이호 대표이사의 인사말씀과 아울러 개회를 선언하시겠습니다.

◎ 이 호 대표이사

- 아침 일찍 이사회에 참석해주신 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.
(개회선언)
- 지금부터 2025년 제3차 사회복지법인 용산상회원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.
- 상정안건에 대해 이경준 과장이 설명하고, 심의·의결토록 하겠습니다.
- 제1호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◎ 이경준 과장

- 안녕하십니까, 이경준 과장입니다.

- 제1호안건 용산상회원 운영규정 변경(안)에 관한 것입니다.

- 당 법인 제규정(이하 ‘운영규정’이라 함)은 2008년 9월 3일 개정 후 현재까지 적용되어 현실화 반영이 필요함에 따라 실정에 맞게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관련 법을 준수하고, 효율적인 법인운동을 하고자 합니다.

- 직제 및 사무분장 규정 : 제5조(대표이사)대표이사(이하 “이사장”이라 한다)는 본원을 대표하여 업무를 통괄하며, 상근직을 원칙으로 한다. 개정, 제6조(이사)①이사중 1인은 상임이사로 정할 수 있다. 개정, 제9조 삭제, 제10조(조직 및 정원)①본원의 조직도는 “별표 1” 정원은 “별표 2”와 같이 한다. 개정, 제11조(업무분장)사무국장·부장은 이사장의 지휘감독하에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본원의 통상업무를 집행관리하고, 다음 각호의 업무를 분장한다. 개정, <별표1> 개정, <별표2> 개정.

- 인사관리규정 : 제4조(직위)직위는 사무국장, 부장, 과장, 대리, 일반사원으로 구분한다.(단, 필요에 의해 별도의 직위를 둘 수 있다.) 개정, 제24조의 1(근무평정)①이사장은 전 직원에 대하여 근무평정 등을 실시하여 승진, 임용, 전보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. 개정, 제24조의 2(평정방법) 삭제, 제24조의 3(평정시기) 삭제, 제24조의 4(근무성적평정) 삭제, 제24조의 5(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) 삭제, 제24조의 6(총점평정의 금지) 삭제, 제24조의 7(경력평정) 삭제, 제24조의 8(가점평정) 삭제.

- 보수규정 : 제1조(목적)본 규정은 용산상회원(이하 “본원”이라 한다) 상근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개정, 제2조(적용범위)상근임원 및 직원의 보수(급여)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 개정, 제3조(용어의 정의)5. “통상임금”이라 함은 기본급, 수당 등을 합한금액을 말한다. 개정, 제4조(보수지급방법)③보수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봉제로 지급한다. 개정, 제6조(계산기간)보수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. 개정, 제8조(휴가·휴직기간의 보수)①휴가중에는 보수전액을 지급한다. 다만, 휴가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. 개정, 제11조(기본급)상근임원 및 직원의 기본급은 연봉제를 따른 월액으로 하고 <별표1>에 따라 지급한다. 개정, 제18조(수당의 지급)예산의 범위 안에서 <별표3>에 의한 수당을 상근임원 및 직원에게 지급한다. 개정, 제19조(직무수당) 삭제, 제20조(근속수당) 삭제, 제21조(가족수당) 삭제, 제22조(기말수당) 삭제, 제23조(정근수당) 삭제, 제24조(퇴직금)①상근임원 및 직원이 면직, 정년퇴직, 해임, 사망 등으로 인하여 퇴직하였을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. 개정, 제25조(퇴직금의 중간정산)관련 법령에 따른다. 개정, <별

표1> 개정, <별표2> 개정, <별표3> 개정.

- 복무규정 : 제12조(년차 휴가)①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연간 8할 이상 근무한 경우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. 개정, ②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. 개정, ③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2년을 초과하는 근속년수에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전항의 휴가 일수에 가산하며, 연간 25일을 상한으로 한다. 연차휴가일수 발생요건 및 휴가일수 산정식은 아래 표와 같다. 개정, ④제13조, 제14조,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휴가한 기간은 전 1, 2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본다. 개정, 제14조의1(출산휴가)②배우자의 출산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3회 분할하여 20일의 범위 내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.로 개정하고자 합니다.

◎ 이 호 대표이사

- 제1호안건 용산상회원 운영규정 변경(안)에 관한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.

◎ 황광동 이사

- 제1호안건 용산상회원 운영규정 변경(안)에 관한 건에 동의합니다.

◎ 이 호 대표이사

-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.

◎ 전체 이사

- 의견 없습니다. 찬성합니다.
(찬성 - 이사:7명, 반대 - 없음)

◎ 이 호 대표이사

- 이의가 없으므로 제1호안건 용산상회원 운영규정 변경(안)에 관한 건에 대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
- 제2호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◎ 이경준 과장

- 제2호안건 2025년 제2차 추가경정 세입·세출 예산(안)에 관한 건입니다.

- 2025년도 법인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2,940,980천원에서 10,500천원 증가한 2,951,480천원으로 편성한 내용의 예산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.

- 금번 추가경정 세입·세출 예산(안) 편성사유와 내용은

- 세입예산 차입금(기타차입금(임대보증금)) 10,500천원 증가(인천 301호 임대차 계약체결 보증금 5,500천원, 인천 202호 임대보증금 5,000천원 상향조정)

- 세출예산 사무비(인건비) 22,440천원 증가(대표이사(이사장) 상근 연봉 78,000천원), 재산조성비(자산취득비) 70,000천원 증가(법인차량 구입비 81,000천원), 상환금(기타차입금(임대보증금)) 10,500천원(세입예산 차입금(임대보증금)증가에 따른 예산편성), 예비비 92,440천원 감소(세입·세출 증감에 따른 계수조정)입니다.

◎ 이 호 대표이사

- 제2호안건 2025년 제2차 추가경정 세입·세출 예산(안)에 관한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요.

◎ 윤종희 이사

- 제2호안건 2025년 제2차 추가경정 세입·세출 예산(안)에 관한 건에 동의합니다.

◎ 이 호 대표이사

-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.

◎ 전체 이사

- 의견 없습니다. 찬성합니다.

(찬성 - 이사:7명, 반대 - 없음)

◎ 이 호 대표이사

- 이의가 없으므로 제2호안건 2025년 제2차 추가경정 세입·세출 예산(안)에 관한 건에 대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

- 제3호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◎ 이경준 과장

- 제3호안건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에 관한 건입니다.

- 당 법인 수익사업용기본재산 중 양재동 120-8소재 임대건물인 1~4층(지하층 공용면적포함)의 임대기간 만료일이 2025년 8월 31일자로 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료를 소폭상향조정하여 관련법에 의거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.

- 임대차 재계약체결의 임대부분은 양재동 120-8 1층, 2층, 3층, 4층, 지1층(주차장)공용면적 포함하여 면적은 약 1,022㎡이며, 임차인 주식회사 에이치비앤에스컴퍼니, 임대보증금 200,000천원, 계약기간 24개월 변동없으며, 월 임대료 23,900천원(부가세별도)에서 법정 임대료 상한요율 5%이내 임차인과 협의하여 1,000천원(부가세별도) 상향조정하여 24,900천원(부가세별도), 관리비는 금액변동없이 4,600천원(부가세별도)으로 책정하여 합계 29,500천원(부가세별도), 임대기간 2025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(24개월)까지입니다.

◎ 이 호 대표이사

- 제3호안건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에 관한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.

◎ 최 역 이사

- 제3호안건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에 관한 건에 동의합니다.

◎ 이 호 대표이사

-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.

◎ 전 체 이사

- 의견 없습니다. 찬성합니다.

(찬성 - 이사:7명, 반대 - 없음)

◎ 이 호 대표이사

- 이의가 없으므로 제3호안건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에 관한 건에 대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

- 이상으로 이사회를 마치겠습니다.

참석하여 주신 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.

-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임원(법인감사는 참석여부와 상관없이 인감도장날인)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2025년 제3차 이사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 (회의종료시각 11시 25분)

2025. 08. 13

사회복지법인 용산상회원 대표이사 이 호



이 사 임 영 호



이 사 김 학 진



이 사 황 광 동



이 사 최 역



이 사 평 진 호



이 사 윤 종 희



감 사 장 근 식



감 사 윤 용 식

